

참고자료.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금리 인하(0.5%)

에너지관리공단 (이사장 鄭長燮)은 “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” (이하 예특회계)의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2003년도 2/4분기 대출금 금리를 2003.4.1일부터 0.5% 인하, 이에 따라 모든 산업체(개인이나, 건물, 수송분야도 포함)를 대상으로 우대금리를 적용하여 지원하는 에너지절약시설설치 및 대체에너지보급사업은 4.0%에서 3.5%로, 집단에너지사업자에게 지원하는 집단에너지공급사업은 5.25%에서 4.75%로 지원금리가 각각 인하됨. 이는 전년동기보다 1.5%가 더 인하된 것으로 산업체(개인이나 건물, 수송분야도 포함)를 대상으로 하는 에너지절약시설설치 및 대체에너지보급사업의 대출금리는 은행이 지원하는 시설자금(7~8%수준)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며, 유사 정책기금이나 정책자금(4.78~5.9% 수준)과 비교해도 1%이상 더 낮은 것임.

〈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변동금리 추이 (절약시설설치사업의 경우) 〉

2002년 2/4분기 (5.00%) → 2003년 1/4분기 (4.0%) → 2003년 2/4분기 (3.5%)

한편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하는 경우는 융자지원은 물론 조세특례지원법에 따라 2003년 말까지 투자금액의 7%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추가로 공제 받을 수 있으며, 이로 인해 약 1.5%정도의 추가적인 금리인하 효과를 누릴 수 있음.

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사업별 지원조건(2003년 2/4분기)

□ 시설자금

사업명	세부사업명	분 야	지원금액 (백만원)	지원비율	이자율 (변동금리)	대출기간	당해연도지원한도액	취급기관	비 고
집단에너지 공급사업	지역냉난방공급		185,000	100%	4.75%	8/7	접수순 지원	본 사	
	CES공급사업								
	산업단지열병합								
에너지 절약시설 설치사업	절약시설 설치사업	산업체·건물열병합	305,000	100%	3.5%	3/5	동일사업자당 100억원	본 사	
		고효율제품 등 생산시설					동일사업장당 100억원 (동일사업자당 200억원)		
		지역에너지개발					동일사업자당 100억원	본·지사	지사:5억미만설비
		산업체에너지절약시설					동일사업장당 100억원		
		건물·수송에너지절약시설					사업장당 100억원 (동일사업자당 200억원)	본 사	
		자발적합약기업					동일사업자당 50억원		
	중소기업창업지원사업		150%	3.5% (신용3.5~6.5%)	5/5	동일투자자당 100억원	본·지사	지사(5억미만) 조명, 폐열이용교환·기열장치	
	ESCO 투자사업		100%	3.5%	3/5	동일사업자당 100억원	본·지사	지사:5억미만설비	
	수요관리 투자사업	전력수요관리설비		4.75%	2/3	주택당 1,500만원	금융기관		
	에너지절약형 주택보급	주택단열개수사업			3.5%	2/2	건설허가사업장당 150억원 (동일사업자당 300억원)	본사	
건물효율등급인증지원사업				2/3	1Set당 300만원어내	금융기관	다수 설치 가능		
대체에너지 보급사업	태양열온수기		25,000			3/5	동일사업자당 150억원	본사	
	대체에너지시설								
합 계			515,000						
전력산업기반기금			10,500	100%	3.5%	3/5	동일사업자당 100억원	본·지사	지사: 5억미만설비

□ 운전자금

대 상	지원비율	이자율 (변동금리)	대출기간	지원한도액	취급기관	비 고
중소고효율에너지기자재제조업체·중소ESCO	90%	3.5%	1/2	동일사업자당 5억원이내	본사	연간매출액기준 2회전(6개월분)
중소창업기업				동일사업자당 10억원이내		
대체에너지이용시설 생산자 및 A/S를 위한 공동망관리자, 대체에너지생산공급자				동일사업자당 5억원이내		